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

이영태

인권운동사랑방 '법대로하자! 불심검문' 운동 팀장

불심검문(不審檢問)이 불법이라고요?

"잠시 검문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당하는 검문은 보통 이러한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두 번은 이러한 검문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귀찮고 바쁘고 하니까 대충 신분증 보여주고 뒤돌아 서기가 대다수고 기분이 나빠도 경찰에게 대항하기란 웬만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일 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문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불심검문'이 무어냐 물으면 대부분 '불시에 하는 검문' 아니냐고 답변을 합니다. 검문을 하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시에 나타나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불심검문'이라고 알고 있고 이러한 검문이 당연한 것인양 알고 있습니다. 시민으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고 당연스레 말하는 경찰조차 불심검문이 어떠한 법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심검문을 당하는 시민이나 학생도, 이를 행하는 경찰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어서 현재 대부분의 불심검문이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인권의 침해가 심각한데도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관행 '불심검문'

현재 경찰이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그 행사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행정에서 많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통행을 강제로 제한하며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검문을 강요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는 월권행위이며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심검문시의 공권력남용은 폭력, 강제연행, 불법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에 의한 인권탄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된 집회장소를 예워싸고 특정한 이유 없이 불심검문을 함으로써 집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집회참여의 자유를 침해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닌데 이는 경찰이 불심검문을 자의로 악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적인 불심검문은 경찰의 구시대적인 불법 관행의 근저에 있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인권침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 제대로 압시다!

불심검문이란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하며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의 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이라는 우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크게 침해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 요건과 행사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불심검문을 행하는 경찰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검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로 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執行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의 적법한 행사방법과 절차

먼저 불심검문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① 불심검문은 반드시 당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불심검문은 '임의' 조항이라서 검문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② 따라서 불심검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불심검문이나 적법하지 않은 검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불심검문이 '임의' 조항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강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에 의한 인신구속절차(사전이든 사후든 영장이 필요)없이 불심검문만으로는 신체를 구속당할 수 없으며 그 의사에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④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7년 11월 27일 서울지방법원은 불심검문 피해자에 국가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결국 불심검문에서 행하는 각각의 행사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위의 기본전제가 모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심검문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행사방법과 절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정지 → 경찰관의 질문 → 신분증제시 → 소지품 검사 → 임의동행.

(1) 정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 따라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의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특정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막아서며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 헌법에 나와있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2) 경찰관의 질문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또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질문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료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비록 정복을 입은 경우라도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는 검문 받는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목적과 이유를 밝힘으로써 질문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비록 위 요건을 경찰관이 다 지키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무가 없으므로 그 검문의 목적과 이유에 관계되고 자신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질문에만 응합시다.

(3) 신분증제시

보통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제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심검문 시 신분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증제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제시 요구는 질문에 의해서 의심이 풀리지 않는 경우 부수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지할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신분증제시를 요구할 시에도 반드시 불심검문의 행사방법과 절차, 즉 경찰의 신분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는 등을 지켜야 하며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표가 있으면 됩니다. 이를 벗어나 특정한 신분증만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신분증을 경찰이 가져가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합시다.

(4)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흉기 이외에 소지품 검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른바 불법·유인물, 불온도서 등 표현물을 적발하겠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 2) 소지품 검사의 방법은 외부에서 만져서 확인하는(*stop and frisk*) 것으로 끝나야 하며 가방이나 주머니를 열어 보이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나 소지인의 의지를 어기고 일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이미 불심검문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라 사전에 수색영장을 받거나 같은 법 216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 수색을 하더라도 이 때에는 사후에 자체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심검문 시 요구당하는 소지품 검사는 명백히 '수색'이 아니므로 당당히 거부합시다.

(5) 임의동행

불심검문을 받다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임의동행의 과정이 '강제연행'으로 탈바꿈되어 강제수사로 이어지고 때로는 구속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임의동행이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면서 실제적으로 '체포'와 비슷한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임의동행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계속 항의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 가. 말 그대로 임의동행이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의 동의없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 나. 동행 시에는 반드시 경찰관의 신분,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고 동행당하는 본인에게 즉시 외부로 연락할 기회를 줘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 다. 임의동행은 6시간을 넘어갈 수 없으며 임의 퇴거할 수 있습니다
- 라. 이러한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행하는 경찰관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합니다
- 마. 임의동행하였더라도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영장없이 진행되는 불법 감금에 의한 강제수사일 경우는 더욱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거부(묵비권)는 신분확인이나 글로 쓰는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을 밀합니다.

불심검문은 위에서 설명한 행사방법과 절차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심검문을 받다가 불법연행되어 급기야는 구속되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서 구속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스스로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자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행 및 구속 당시의 대응요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6) 연행 및 구속

- 연행되었을시 기본적인 대응이나 주장할 권리는 임의동행 시의 마친거지입니다. 이에 추가해서
- 가. 가장 기본적으로 미란다 원칙(묵비권, 변호인선임권, 연행사유에 대한 고지)을 지킬 것을 수사관에 요구하고 외부로 연락하는 것은 엄연한 권리이므로 요구하고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 나.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합시다
 - 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전까지는 되도록 진술거부권을 행사합시다
 - 라. 체포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없이 48시간 이상 구금(임의동행파는 차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히 항의하고 풀어줄 것을 요구합시다

마. 가능한 인권단체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시다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대응은

- 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반드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활용합시다. 이는 본인 및 가족 친지, 변호인 등이 스스로 알고 신청해야 됨에 유의합시다.
- 나. 구속될 경우, 구속사유를 반드시 파악하도록 합시다.
- 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구체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위와 같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절차를 구태여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지 반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절차나 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절차에 대하여도 알고 있지 못할 경우 자칫 자신의 무리한 판단과 행동이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펴내는 인권하루소식에는 어느 단체의 누가 연행되었거나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이 기사들의 주인공은 대체로 민족민주운동, 진보운동 진영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들 민주운동, 진보운동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람들조차 어처구니없는 경찰이나 공안기관의 불법행위에 그대로 응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에서 초동수사가 이후 수사의 향방을 결정하듯이 불심검문으로부터 인신구속의 절차는 시작되고, 여기서 꼬이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불심검문 그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의 형사소송 절차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법 정을 통해 완벽한 형사소송 절차를 획득해낸다 해도 그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경찰이 행정편의적인 불법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때 그런 완벽한 법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이 규정한 내용을 경찰이 준수할 것을 강제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비폭력으로 저항함으로써 경찰을 변화시키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때만이 경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은 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권력의 민주적 개혁이 구호로만 주장되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실천에 옮기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개혁, 권력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걸음부터 제대로 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잘못부터 민주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쌓이고 싸여 결국 쟁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바로 힘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불심검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관에게 따집시다! '당신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강제적으로 한다면 나는 당당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소', '내가 검문을 당하기 전에 당신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려는 경찰이라면 왜 불심검문에 응해야 하는지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시오'

여러분은 이미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신의 행동의 변화로부터, 불심검문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경찰의 변화로부터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행동 하나하나로 경찰의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고 비폭력 불복종운동의 좋은 사례로, 구체적인 승리의 경험으로 남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제3조 (불심검문)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범하여 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제1항이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품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들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번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